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24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4.1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32회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만희)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가.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u> 2. 3.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③ (생략)	제22조(과태료) <u><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의4¹⁾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22조제1항에서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경기도 용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 구호요청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 구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처럼 가해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는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인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워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²⁾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형벌 규정을 도입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허민숙,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02호, 2022.10.17. 참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41조³⁾에 규정된 형을 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도입하려는 경우 의무위반의 성질·태양이 어떠한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9조의4제3항과 제22조제1항은 2013년 7월에 신설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2012.11.15.)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과잉처벌 등 인권침해 우려,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4)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752쪽.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것임(2013. 6.26. 의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에서 ①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경찰의 출입·조사·질문의 실효성과 피해자 대면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형사처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 ② 거부나 기피 등 다소 약한 의미의 행정적 협조의무 위반 정도의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입장, ③ 사실상 수사에 불응·거부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조사권 남용이나 과잉처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형벌·과태료 둘 다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제기되어 절충적인 방안으로 과태료로 결정됨⁵⁾.

현재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직원 등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벌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함.

5) 법제사법위원회, 제315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제2소위(2013년 5월 6일) 회의록, 35쪽

<현장조사 거부·기피 또는 업무수행 방해 관련 입법례>

구분	근거법조항	조사주체	의무위반 행위	제재 수단
과 태 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 방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의5	사법경찰관리,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기피 또는 업무 방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3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 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사법경찰관리,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3항제7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답변 거부·기피 또는 거짓답변, 아동의 답변 방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협박·위계·위력에 의한 업무 수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형벌과 과태료 조항 둘 다 규정함.

참고로, 최근 5년간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방해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2건 수준으로 많지 않음.

<현장조사 방해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현장조사 건수(건)	183,604	166,157	171,894	176,663	179,865	878,183
현장조사 방해(건)	1	0	1	2	2	6
현장조사 방해자 과태료 부과(건)	1	0	1	2	2	6

자료: 경찰청

종합하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의 죄질 및 가벌성 정도, 가정구성원간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므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실효적인 현장조사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업무방해에 대해 형벌을 규정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이만희의원, 위성곤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